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40
----------	-------

발의연월일 : 2026. 3. 20.

발 의 자 : 김예지 · 김소희 · 박덕흠
최수진 · 신성범 · 김상훈
김선교 · 김대식 · 송석준
고동진 · 정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6호).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념일) 국가기념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며 자부심·경각심 등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국가기념일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 모든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검소하게 실시하고 해당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다목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를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의”로 한다.

[별표]

이 법에 따른 국가기념일(제2조 본문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월 28일
2	납세자의 날	3월 3일
3	3·8민주의거 기념일	3월 8일
4	3·15의거 기념일	3월 15일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주 수요일
6	식목일	3월 20일
7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주 금요일
8	4·3희생자 추념일	4월 3일
9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주 금요일
10	보건의 날	4월 7일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 11일
12	4·19혁명 기념일	4월 19일
13	장애인의 날	4월 20일
14	과학의 날	4월 21일
15	정보통신의 날	4월 22일
16	법의 날	4월 25일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
18	근로자의 날	5월 1일
19	어린이 날	5월 5일
20	어버이 날	5월 8일
2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
22	스승의 날	5월 15일
23	성년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
24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월 18일
25	부부의 날	5월 21일
26	바다의 날	5월 31일
27	의병의 날	6월 1일

28	환경의 날	6월 5일
29	현충일	6월 6일
30	6·10만세운동 기념일	6월 10일
31	6·10민주항쟁 기념일	6월 10일
32	6·25전쟁일	6월 25일
33	철도의 날	6월 28일
34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주 수요일
35	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36	국군의 날	10월 1일
37	노인의 날	10월 2일
38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
39	재향군인의 날	10월 8일
40	체육의 날	10월 15일
41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월 16일
42	문화의 날	10월 셋째 주 토요일
43	경찰의 날	10월 21일
44	국제연합일	10월 24일
45	교정의 날	10월 28일
46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47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
48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
49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50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51	소비자의 날	12월 3일
52	무역의 날	12월 5일
53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

비고

1. 제8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3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